
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달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98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6.

발 의 자 : 이달희 · 고동진 · 서천호
정희용 · 박대출 · 김은혜
김 건 · 김상훈 · 김도읍
강선영 · 주호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“순직군경”이라는 용어를 인용하고 있음.

그런데 해당 법률에서 “군경(軍警)”의 정의에는 군인이나 경찰 외에도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는데, 국민이 이 용어를 읽고 소방 공무원이 포함될 것이라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 공무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법률 용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“군경”을 “군경소방”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현행법에도 반영함으로써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는 용어임을 모든 사람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9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달회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의안번호 제1398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제2항제1호 중 “순직군경”을 “순직군경소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“순직군경”을 “순직군경소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(보훈 등 예우) ① (생략)	제59조(보훈 등 예우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.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<u>순직군경</u> 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	1. ----- ----- ----- <u>순직군경소방</u> ----- -----
2. ~ 4.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법률에 따른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<u>순직군경</u>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	2. ----- ----- ----- <u>순직군경소방</u> ----- -----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④ · ⑤ (생략)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